

KREI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남원호 · 김종훈 · 장지연 · 박정환 · 이상은 · 김미복



KREI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남원호·김종훈·장지연·박정환·이상은·김미복



연구 담당

남원호 | 팀장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김중훈 | 실장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 실장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박정환 | 팀장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상은 | 팀장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김미복 |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954 연구자료-1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10.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 | 979-11-6149-599-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 2.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의 개념과 유형

- 1. 사회적 금융의 개념 9
- 2. 사회적 금융의 유형 11
-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개념과 유형 14

제3장 사회적 금융 현황: 공급 측면

- 1. 공공재원 21
- 2. 민간재원 26
- 3.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현황 시사점 28

제4장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사업 사례

- 1.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사례 33
- 2. 지역 단위 민간기금 사례 42

제5장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 1.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의 한계 49
- 2.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52

부록

1. 지역별 중개기관 리스트	61
2. 지자체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 현황	64
참고문헌	95

제2장

〈표 2-1〉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유형 15
〈표 2-2〉 중개기관의 법인 형태 16
〈표 2-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유형 현황 17

제3장

〈표 3-1〉 공공재원 연도별 공급 규모 25
〈표 3-2〉 민간재원 연도별 공급 규모 추정 28
〈표 3-3〉 사회적 금융 공급 현황 29

제4장

〈표 4-1〉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규모 34
〈표 4-2〉 지자체의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 35
〈표 4-3〉 지역 단위 민간기금의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 43

제2장

〈그림 2-1〉 사회적 금융 개념 10

제3장

〈그림 3-1〉 서민금융진흥원 사업구조도 23
〈그림 3-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구조도 23
〈그림 3-3〉 투자 사업구조도 24

제4장

〈그림 4-1〉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업구조도 37
〈그림 4-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사업구조도 40
〈그림 4-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사업구조도 41

제1장

서론



1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18년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본 방향으로 다섯 가지를 설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첫째, 사회가치기금(가칭) 설립 지원, 둘째,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셋째, 민간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넷째, 정부·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다섯째, 인력·판로·보조금 등 지원과 사회적 금융 정책의 연계 강화다.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통한 사회적 금융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국내 최초 민간 사회적 금융 도매 중개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2019년에 설립되어 민간재원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금융 기금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사

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목표는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금융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1. 연구내용

사회적 금융 개념과 유형, 전체 사회적 금융 현황을 통하여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공급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 기금, 민간 기금 등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공급 체계의 한계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첫 번째는 문헌 연구이다. 국내 사회적 금융 현황 관련 기존 연구 자료, 한국사회적금융협의회,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의 보도자료 및 공개자료,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서, 토론회 자료, 외국 사례 연구 자료 등이 대상이다. 문헌 연구를 통해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는 면접조사이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담당자,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담당 공무원, 투융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을 통한 사례조사를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사업 현황, 애로사항, 제도개선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이다.

제2장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의 개념과 유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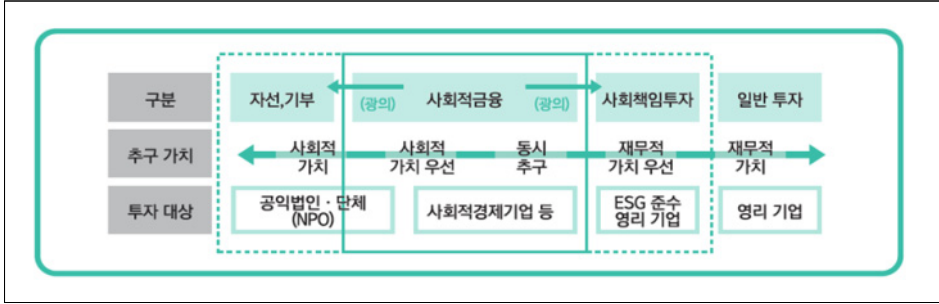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의 개념과 유형

1. 사회적 금융의 개념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2018년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는 사회적 금융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좁은 의미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육성법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지침상의 마을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소셜벤처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소셜벤처는 기술보증기금 사회가치평가센터로부터 소셜벤처 판별 통지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투자·융자·보증뿐만 아니라 보조금(Grant)이나 자선도 포함되는데,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우수한 곳에 투자하는 사회적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도 포괄한다.

〈그림 2-1〉 사회적 금융 개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시장에 비해 수익이 낮고, 원금 회수 관련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은행 등의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사회적 가치의 신용평가 미반영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투융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금융의 현실적인 유용성에 대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인 (사)전북사회가치연대회의의 사업 담당자 인터뷰 내용을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자활기업이 일반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여 연리 19%의 고금리 카드사 대출을 받게 되었다가 연리 2.5%의 사회적 금융의 대출자금을 이용하면서 경영 안정화로 들어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글상자 2-1〉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인터뷰 내용

- 연구자: 사회적 금융 활동에 있어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경우
- 피면담자: 자활기업 '0000'의 경우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 시설인 사업장 오페수 처리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서 카드사로부터 연리 19%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이 부족하여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대출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입니다. 전북 사회적경제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시설을 잘 갖추게 되었고, 고금리의 카드 부채를 상환하고 경영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일반 금융권에 접근하기 힘든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금융을 통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를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 작은 돈이지만 당사자 조직이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자조기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서 멘토링했던 기업 중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진출하였고, 전북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상환도 잘하면서 지역에 기여하고자 자조기금을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보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한편 융자신청을 하였으나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 다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탈락한 기업이더라도 사회적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 컨설팅을 하고 다른 자원을 연계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제반 사정으로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 더욱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2021: 17)

2. 사회적 금융의 유형

사회적 금융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진수, 2019; 이준호, 2015). 첫째,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 Finance)이다. 빈곤층 소액대출이나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이다. 빈곤층뿐만 아니라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으로서, 주로 소액금융이나 서민금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이다(이준호, 2015).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그라민 은행이 있다. 그라민 은행은 1976년 유누스가 설립한 것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창업자금 등을 대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다. 국내 사례로 서울시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진행하였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자금대출,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 지역 금융 또는 지역사회 금융(Community Finance)이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금융을 말한다.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이다(이준호, 2015). 가령, 미국의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은행 및 금융기관 법(Community Development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을 통한 CDFI펀드를 조성하고,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자금제공을 꺼리는 영역에 전념하는 지역 풀뿌리 금융기관을 CDFI기관으로 인증한다. 인증받은 기관은 전통적인 대출기관보다 유연한 대출 제공, 재무 컨설팅,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 합리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낙후된 지역의 사회주택 개발, 일자리 및 지역 비즈니스 창출, 마을공동체 시설의 확장 등이다(박정환, 2019). 국내 지자체가 사회적 금융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기금’ 등이다. 민간 사례로는 지역 내 공기업의 출연을 통하여 민간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산의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인천의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 등이 있다.

셋째, 사회목적투자(Impact Investment or Social Investment)다. 사회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를 말한다.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투자와 동일하지만, 투자 목적이 금전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을 의미한다(이준호, 2015). 국내에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등에서 다양한 임팩트 펀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임팩트 펀드 사례로 2021년에 한국성장금융은 사회투자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공고를 통해 임팩트 펀드 운용사를 모집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였다. 사회문제 해결에 약정 총액의 60%를 공급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기업이 사업의 주체로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약정 총액의 40%를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그 외 민간 펀드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도 한다.

넷째, 협동조합금융(Cooperation Finance or Local Finance)이 있다. 협동조합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자본을 조달하고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금융을 공급하는 것이다. 동종업자, 동업자 등 인적 결합을 중심으로 하여 상호부조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을 포함한다(이준호, 2015). 협동조합금융은 좁은 의미로는 협동조합 조직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자조기금을 포함한다. 협동조합금융에는 지역주민의 출자를 통해 자금을 모아 지역사회에 금융을 공급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있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의 ‘데자르탱 신용협동조합’, 밴쿠버를 기점으로 하는 ‘밴시티 신용협동조합’ 등이 있다. 국내에도 다양한 신용협동조합이 있으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나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전문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은 많지 않다. 신용협동조합 이외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자조기금을 조성하는 공제 조직인 비영리 민간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문 공제조직인 ‘재단법인 밴드’는 회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으로 자조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회원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함으로써 사회적 금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개념과 유형

3.1.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개념

일반 금융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기관의 개념, 유형,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경우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금융에서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을 지칭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의 공급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조세), 투자자, 예금자, 기부자(출연자) 등이 있다. 수요자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 사업 담당 조직이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 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비영리 민간재단 등 민간 사회적 금융 기관을 지정·육성”(윤호중, 2016)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중개기관을 사회적 금융 공급의 전달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투융자운용 세칙에서는 “지역·업종·부문 단위로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금융을 조성하고 공급하는 기관으로 재단이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임팩트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를 집행함에 있어 이를 중개하는 모든 기관”(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19)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사회적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을 조성하고 공급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2.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유형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미션과 고객기반, 추진주체, 자금조달 및 자금 제공방식 등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장종익, 2018).

중개기관은 금융을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에 따라 전국 단위 중개기관과 지역 단위 중개기관, 자조기반 여부에 따라 자조기금 중개기관과 비자조기금 중개기관, 자금공급 방식에 따라 대출형 중개기관과 투자형 중개기관, 영리목적 여부에 따라 비영리법인 중개기관과 영리법인 중개기관, 간접 또는 직접 공급인지에 따라 도매형 중개기관과 소매형 중개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지역구분	전국 단위 중개기관	• 투융자 대상이 전국에 분포
	지역 단위 중개기관	• 투융자 대상이 특정 광역지역 단위 내로 한정
직·간접 공급 구분	도매형 중개기관	• 소매형 중개기관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간접적으로 자금공급
	소매형 중개기관	• 사회적경제기업에 직접 자금공급
자조기반 여부	자조기금 중개기관	• 자금의 최종 수요자가 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중개기관 - 신협, 공제사업, 기타 자조기금 기관 등
	비자조기금 중개기관	• 다양한 외부 채널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중개기관 - 은행, 기부금 운영기관, 대부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
자금공급 방식	대출형 중개기관	• 사회적 금융자금의 50% 이상 융자로 자금공급 - 은행, 신협, 대부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대출형), 비영리법인
	투자형 중개기관	• 사회적 금융자금의 50% 이상 투자로 자금공급 - 임팩트 투자자산운용사, SIB 운영기관,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증권형)
영리 목적 여부	비영리법인 중개기관	• 비영리 목적의 중개기관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사회적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영리법인 중개기관	• 영리 목적의 중개기관 - 상법상의 회사, 은행, 상호저축은행, 대부업, 임팩트 펀드 운용사

자료: 장종익(2018)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작성.

사회적 금융에서 재원조달도 중요하지만 전달체계인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개기관은 법인 형태에 따라 설립 요건, 자금조달 방법, 자금

공급 방법에 제한 요건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힘들며, 기부 또는 차입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공급 방식에도 용자는 가능하나, 펀드 운용사의 중개행위와 같은 금융업은 할 수 없다. 또한 직접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의결권 있는 지분 투자는 5%(공익법인은 1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주식회사 등의 영리법인은 금융업 관련 라이선스(은행업, 대부업, 자산운용사 등)를 취득해야 한다.

〈표 2-2〉 중개기관의 법인 형태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기본 구성	사람(회원)	재산(동산, 부동산)	사람·법인(조합원)	주주(주식) (주주는 주식 한도 내에서 출자의무 부담)
기본재원 요건	공익법인법상 1억 원 이상	공익법인법상 5억 원 이상	최소납입액 제한 無 (단 1인 납입액이 전체 조합원 출자금합계액의 30% 초과 금지)	100원 이상 가능
재산 확보	회비, 기부(후원)금	기부(후원)금, 출연재산 및 그 수입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	조합원 출자금, 회비, 기부(후원)금 등	주식발행 (유무상 증자 등)
투자·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출자 가능(사단법인-총회, 재단법인-이사회 의결사항) 의결권 있는 지분 투자는 5% 이하 제한 (공익법인은 10%) 수익금의 목적사업 재투자 요건 액셀러레이터 등록해 개인투자조합 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보험업 금지 투자·출자 가능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 시 가능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운용 가능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 가능 - 정책자금(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기금) 채용자 가능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공제사업 가능 (출자금 2/3 내)	대부업,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P2P) 금융만 용자 가능
배당	비영리법인은 내부 배당 불가 (다만 영리법인 투자·출자 시 주주로서 권리 행사 및 배당취득 가능)			배당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대부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후원금) 처리는 물론 공제부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구조여서 자조기금 성격을 취하기 어려움 - 공공부문 채용(지자체 기금) 활용 제한(사회적기업 미인증 시) 사회적협동조합은 대부업 자회사 설립 불가(협동조합기본법상 금융업 금지 조항) 			

자료: 저자 작성.

3.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현황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2021년 말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의 중개기관 현황을 보면 중개기관 수는 총 73개이며, 융자형 중개기관이 32개, 투자형 중개기관이 40개, 투융자를 병행하는 곳은 1개이다. 전국 단위 중개기관은 55개이고 지역 단위 중개기관은 18개로 전체 중개기관 중 지역 단위 중개기관의 비율은 24.7%이다. 지역 단위 중개기관 중에 투자형 중개기관은 없고, 모두 융자형 중개기관이다. 투자형 중개기관인 (주)소풍벤처스는 최근 강원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 강원 지역에 특화된 임팩트 펀드에 주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단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국 단위 중개기관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지역 단위 중개기관 18개 중에 비수도권 지역 중개기관은 13개로 경남 1개, 광주 1개, 대전 1개, 부산 2개, 제주 1개, 충남 1개, 충북 2개, 전북 1개, 강원 2개, 경북 1개로 분포되어 있다.

〈표 2-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유형 현황

구분	전국 단위 중개기관	지역 단위 중개기관	합계
투자형 중개기관	40개	0개	40개
융자형 중개기관	14개	18개	32개
투융자형 중개기관	1개	0개	1개
합계	55개	18개	73개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2021).

제3장

사회적 금융 현황: 공급 측면



3

사회적 금융 현황: 공급 측면

1. 공공재원

1.1. 공공재원 기관

사회적 금융의 공공재원은 지역으로의 공급 범위에 따라 전국 단위 공공재원과 지역 단위 공공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국 단위 공공재원으로 대출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있다.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다.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이 있다.

지역 단위 공공재원은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이 있다.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은 지역별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기금명이 조금씩 다르다. 지역 단위 공공재원은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기업에만 공급되는 점에서 전국 단위 공공재원과 차이점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

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투융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전북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하였고, 전북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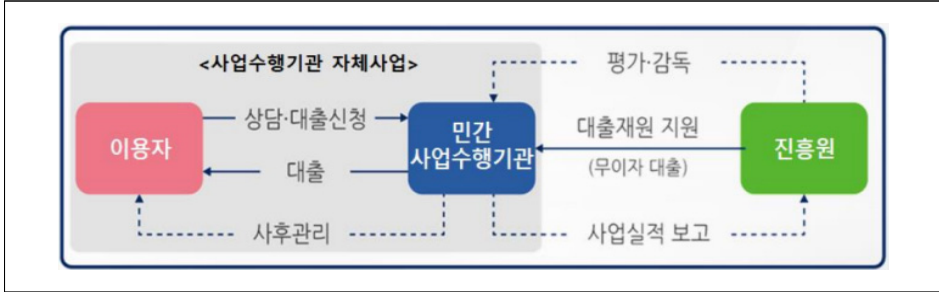
1.2. 자금공급 구조

1.2.1. 대출

가) 간접대출 방식

사회적 금융 공급자 또는 도매형 중개기관이 공모 등을 통하여 소매형 중개기관(또는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소매형 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재대출하는 방식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등의 지자체 기금은 민간 사업수행기관에 무이자로 대출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연리 3~4% 이내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재대출하고 있다. 간접대출 방식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출사업 전문 역량이 있는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직접대출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매형 중개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기금을 운영하게 될 경우 소위 선별비용(screening cost)과 감독비용(monitaring cost)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장종익, 2018).

〈그림 3-1〉 서민금융진흥원 사업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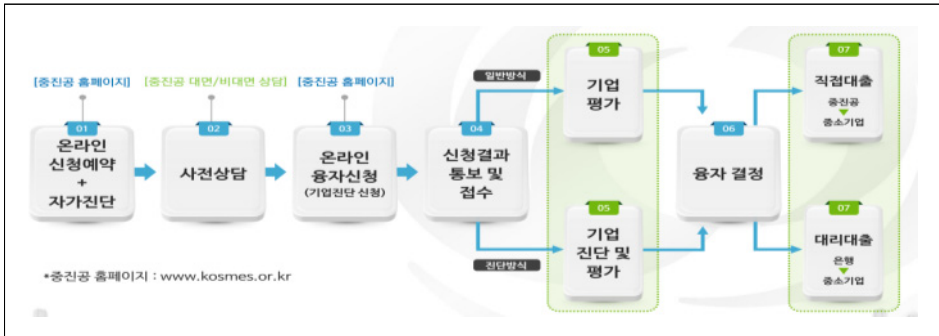


자료: 이지은(2022).

나) 직접대출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주로 자체 지점이나 지역 본부를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직접 대출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일반 방식으로는 직접대출을 하고 있으나, 진단 방식의 경우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북구, 강동구, 화성시 등이 있다.

〈그림 3-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구조도



자료: 조태영(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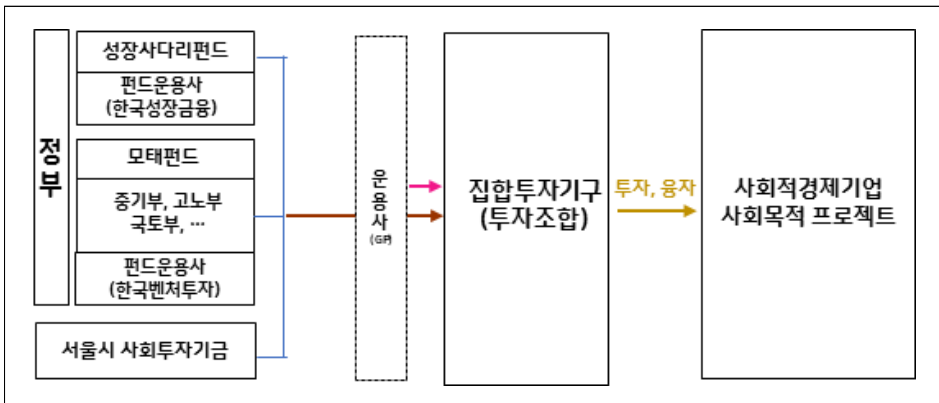
1.2.2. 보증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지역별 영업조직을 통하여 보증심사를 하고 시중 은행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을 하는 사업구조이다. 구체적인 과정은 보증상담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약정·자금집행 →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1.2.3. 투자

투자는 펀드를 형성하여 이루어진다. 펀드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운용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을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공공재원에 기반한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지자체 기금에서 임팩트 펀드 전문 운용사를 선정하고, 운용사는 공공재원과 민간 투자자들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투자조합 또는 펀드)를 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그림 3-3〉 투자 사업구조도



자료: 저자 작성.

1.3. 공급 규모

공공재원의 공급 규모는 2017년 676억 원에서 2021년 5,417억 원으로 약 700% 증가하였다. 2021년 공급 형태별 규모를 보면 보증이 3,110억 원으로 57.4%를 차지하고 있고, 용자(정책기관 용자, 지자체 기금 용자)가 1,497억 원으로 26.7%, 투자가 810억 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로 구분할 경우 지역 단위인 지자체 기금은 330억 원으로 6.1%에 불과하다.

〈표 3-1〉 공공재원 연도별 공급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연도별 공급 금액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단위	정책기관 용자	235	459	787	918	1,167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기관 보증	328	2,006	2,713	2,808	3,110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투자	-	237	855	784	810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지역 단위	지자체 기금 용자	113	165	297	472	330	지역별 사회적경제기금
소계		676	2,867	4,652	4,982	5,417	

자료: 금융위원회(2021). 2021년 10월 말 기준 실적.

2. 민간재원

2.1. 민간재원 기관

민간재원은 자조기금, 기부금, 민간 주도의 임팩트 펀드 투자자, 사회성과보상 사업(SIB)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자조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회원으로 공제부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고, 소속 회원 기업에 긴급자금 등을 대출하는 대출형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재)밴드의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대구 동구 우애기금 등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차입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을 하는 자조기금으로 한국사회혁신금융(주)의 사회혁신기금, 충북시민재단의 충북사회적경제기금,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전북사회적경제기금 등이 있다. 한편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는 전국의 지역자활센터의 저소득층 참여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활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역의 자활기업에 저리로 대출사업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화성, 울산, 성남, 평택 등의 지역에서 자조기금을 조성하는 움직임이 있고, 업종 조직으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등에서 자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부금의 경우 보통 지역의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또는 사회적금융기관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으로 지역 민간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융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벤처자선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 지역의 경우, 공기업이 참여하여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을 조성하였고,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이 중개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 지역의 경우도 공기업이 기부하여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을 조성하였고,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도매형 중개기관인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경우, 은행, 신협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소매형 중개기관에 사회적 금융 사업자금을 투융자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임팩트 펀드 투자사업은 MYSC, D3주빌리파트너스 등의 임팩트 투자 운용사가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임팩트 펀드를 결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목적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모태펀드에 지역의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한 ‘강원 피크닉 펀드’, 경남 지역의 기업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청년임팩트투자펀드(하모펀드)’ 등이 있다.

2.2. 민간재원 자금공급 구조

민간재원의 공급구조도 공공재원의 공급구조와 유사하다. 융자사업의 경우도 소매형 중개기관이 소매형 중개기관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간접대출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소매형 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직접대출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민간재원의 경우 공공재원에 비해 심사기간이 짧고, 심사절차가 간편하며, 공공재원에서 공급하기 힘든 긴급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팩트 투자사업의 경우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가 투자조합의 투자자로 참여하듯이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자로서 참여한다. 민간재원의 경우 사회적 금융 영역의 보증사업은 없다.

2.3. 민간재원 공급 규모

민간재원은 2017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민간재원의 2021년 공급 규모를 보면 584억 원으로 추정된다. 자조기금,

벤처자선을 통하여 진행된 용자는 118억 원으로 전체 민간 공급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 임팩트 펀드 운용사 및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운용기관을 통하여 공급된 투자는 466억 원으로 민간 공급의 79.8%를 차지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의 지역 단위 중개기관은 없으며, 민간 기금 용자의 지역 단위 중개기관을 통한 공급은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 전북사회적경제기금(자조) 등을 합쳐서 약 1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재원의 지역 단위 중개기관을 통한 공급은 민간재원 공급에서 2.5%에 불과하다.

〈표 3-2〉 민간재원 연도별 공급 규모 추정

단위: 억 원

구분	연도별 공급 금액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기금 용자	70	90	100	110	118	자조기금, 벤처자선
민간주도 임팩트 투자	150	200	160	410	466	임팩트 펀드, 직접투자, SIB
소계	220	290	260	520	584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자체 조사를 통한 추정치임. 2021년 기준.

3.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현황 시사점

2021년 공공의 지역 단위 재원은 330억 원으로 전체 공급 규모 중 5.5%이고, 민간의 지역 단위 재원은 15억 원으로 0.2%에 불과하다.

공공과 민간을 모두 합치더라도 지역 단위 재원은 5.7%이다. 사회적 금융의 지역 단위 재원의 규모는 대단히 열악하고 민간재원은 더욱 심각하다. 지자체 기금 중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의 지역 단위 재원을 제외할 경우 전북, 전주, 완주, 경남 등의 지자체 기금을 모두 합쳐도 39.45억 원이다. 2021년 기준 비수도

권 지역 단위 재원은 약 54.45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공급 규모의 0.9%에 불과하다. 지역 단위 재원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기금이기 때문에 지자체 기금은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기반이 없는 지역에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3-3〉 사회적 금융 공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공급 규모		비고
		금액	비율	
공공재원	전국 단위	5,087	84.8%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지역 단위	330	5.5%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민간재원	전국 단위	569	9.5%	전국 단위 자조기금, 벤처자선, 임팩트펀드, 직접투자, SIB
	지역 단위	15	0.2%	지역 단위 자조기금 및 벤처자선
소계		6,001	100%	

자료: 공공재원은 금융위원회(2021)를 인용, 민간재원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자체 조사를 통한 추정치.

제4장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사업 사례



4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사업 사례

1.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사례

1.1. 지자체 기금 현황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13개 지자체에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112개 지자체 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의 근거 규정이 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금융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세종시 등이 있다.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의 화성, 성남, 서울시의 성동, 성북, 은평, 강동, 전라북도의 전주, 완주 등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지자체 중에 기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시로 950억 원이다. 기초 지자체 중에는 화성시가 6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기초 지자체의 기금 규모는 2020년 자료를 토대로 2021년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표 4-1〉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2021년 규모	기금명	설치 연도
광역	서울	95,000	사회투자기금	2012
	경기	30,000	사회적경제기금	2016
	충남	550	사회적경제기금	2019
	전북	445	사회적경제기금	2020
	경남	3,000	사회적경제기금	2020
	세종	1,000	사회투자기금	2018
기초	강동구	300	사회적경제투자기금	2016
	성동구	750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4
	성북구	1,400	사회투자기금	2015
	은평구	3,650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5
	성남시	2,000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0
	화성시	60,000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4
	완주시	1,100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1
	전주시	800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9
소계		199,995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자체 조사 내용, 2021년 기준.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용자사업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의 이차보전, 신보의 특례보증 출연(보증료 보전), 자조기금 조성 지원, 중개기관 사업 수행비 지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중 용자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된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서울시가 18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39억 5,000만 원, 경남이 21억 원을 공급하였다. 공급 현황은 지자체에서 그 해 편성한 예산 또는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된 규모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 4-2〉 지자체의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2021년 공급 규모
광역	서울	18,100
	경기	3,950
	충남	0
	전북	445
	경남	2,100
	세종	0
기초	강동구	100
	성동구	300
	성북구	400
	은평구	900
	성남시	0
	화성시	6,000
	완주시	0
	전주시	800
소계		33,095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자체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1.2.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례: 채용자, 투자

1.2.1. 지자체 조례 및 주요 사업

서울시는 2012년 7월 30일에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기금 조성의 근거 조항은 9가지가 있다.

- 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 ②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 ③ 사회, 환경,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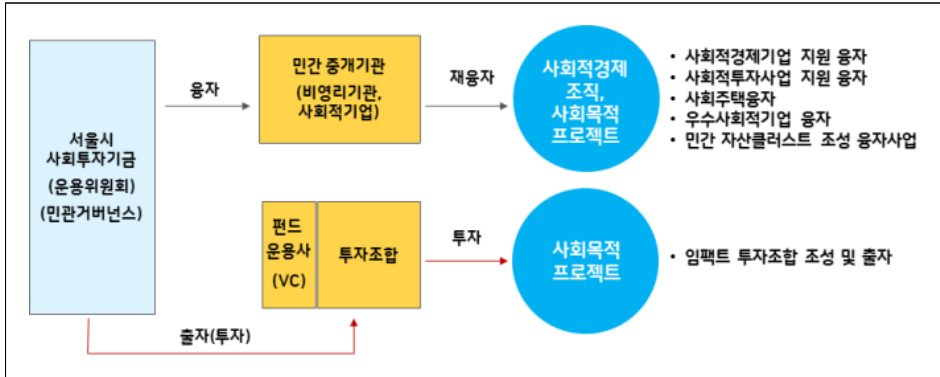
- ④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원
- ⑤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 ⑥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용자사업비 지원
- ⑦ 수행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 ⑧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용자 또는 보조
- ⑨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에 대한 지원

1.2.2. 사업구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자금공급 과정을 보면, 용자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민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 금융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에 재투자한다. 여기서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의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투자의 경우도 공모를 통하여 임팩트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임팩트 펀드 운용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수행기관에 무이자로, 최대 6년(2년 거치 4년 원금 분할 상환)까지 대출하고 있다. 최종 용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서울시 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투자 사업비로 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 원, 우수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 원, 사회적 투자 사업 용자는 최대 10억 원이며, 용자기간은 최대 6년, 이자율은 연리 3% 이하로 용자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림 4-1〉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업구조도



자료: 저자 작성.

1.2.3. 시사점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은 투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용자사업만 수행하고 있다. 용자사업 구조만 볼 경우 충남, 전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서울시의 사업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용자사업 모델에 대해 수행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애로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수행기관에 대한 2년 거치 4년 분할의 상환방식은 수행기관이 상환된 자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다시 용자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수행기관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수행기관이 낮은 이자수익으로 운영비와 대출 손실(이하 대손)을 모두 감당하기가 어렵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최종 이자율을 연리 3% 이하로 고정하고 있고, 수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심사기간, 원리금 분할 상환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이자수익은 연리 2.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행기관이 서울시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사업을 실행할 때 이자수익률을 연리 2.5%로 가정할 경우 연간 2,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1명의 실무자를 고용하기 힘든 구조이며, 연간 대손이 대출금의 2.5%를 초과할

경우 이자수익을 운영비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대손 충당으로 사용하게 된다.

셋째, 지자체의 엄격한 채권 보존 방식으로는 수행기관을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수행기관도 용자할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할 때 사회적 가치보다는 상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2022년 수행기관 공모 공고문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수행기관이 채권 이행을 위한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의 ‘기업금융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행기관이 서울시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약 6,000만 원의 보증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수행기관은 낮은 이자수익으로 운영비와 대손을 충당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료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힘들다. 서울시는 2022년 수행기관 공모를 4월 말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나 신청한 수행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1.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사례: 재용자의 개선, 대손 부담, 중개기관 육성

1.3.1. 지자체 조례 및 주요 사업

전라북도는 2020년 8월 14일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전북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기금조성의 근거 조항은 6가지가 있다. 전라북도의 조례는 서울시와 달리 사회적금융기관의 육성과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보전의 근거 조항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육성 지원 및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

- ①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 설립 또는 운영 지원
- ②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보전과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 ③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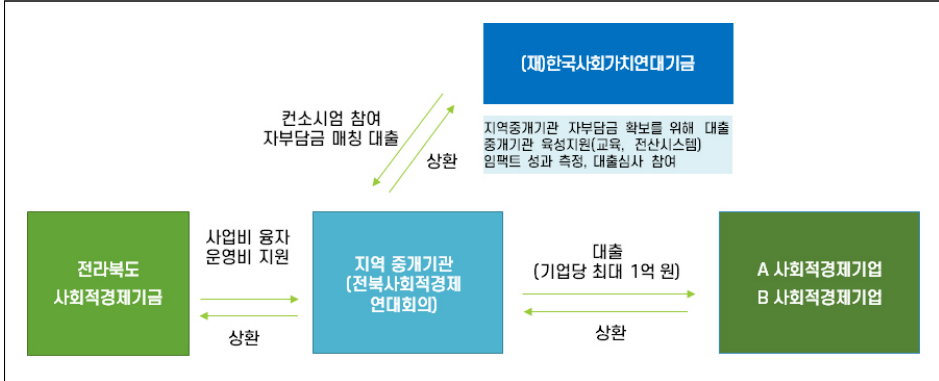
- ④ 사회적금융기관과 육성에 필요한 경비
- ⑤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
- ⑥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1.3.2. 사업구조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의 융자를 통한 자금공급 과정을 보면, 공모를 통하여 민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금융사업 자금을 대출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채용자한다. 서울시의 사례와 동일하게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의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서울시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수행기관의 컨소시엄을 허용하여 대표 수행기관은 지역 소재로 제한하나, 컨소시엄 참여 수행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전문성을 갖추거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지역 내 전문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없기 때문에 초기 육성을 위하여 전문 중개기관의 컨소시엄 결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북도가 기금운용 손실 부담금을 조성하여 대손 발생 시 50%를 부담함으로써 지역 수행기관(중개기관)의 대손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수행기관에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낮은 이자 수익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지역 수행기관(중개기관)의 운영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수행기관(중개기관)의 자부담금 매칭비율을 5:1로 함으로써 자조기금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컨소시엄 참여기관인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대표 수행기관인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자부담금에 대한 매칭 자금을 공급하고, 사회적 금융 전문가 교육, 대출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심사기준 자문, 임팩트 성과 측정 및 리포팅 자문 등의 중개기관 육성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4-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사업구조도



자료: 저자 작성.

1.3.3. 시사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의 경우 서울시의 채용자 사업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중개기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강하다. 또한 중개기관의 대손 부담 경감을 통하여 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할 경우 상환 가능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금융의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목적에 보다 충실한 사업구조로 볼 수 있다.

1.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사례: 대손 부담, 지역 신탁의 신용대출

1.4.1. 지자체 조례 및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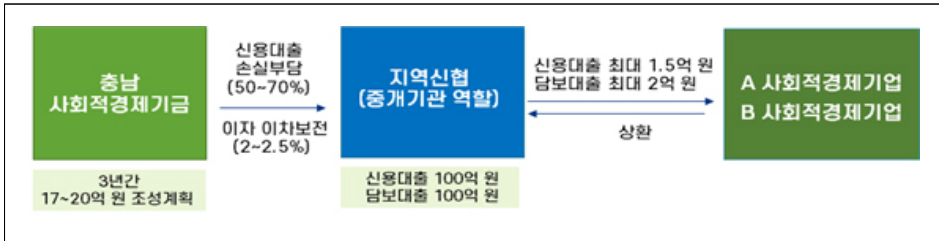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기금 조성의 근거 조항으로 제19조에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 ②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 ③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1.4.2. 사업구조

충청남도는 2019년의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운영 기본계획(안)에 근거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역 내 신협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용대출 100억 원, 담보대출 100억 원을 공급하고,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에 신용대출 손실금의 60~70%를 분담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에 대해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2.5%,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의 이자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3년간 지원할 예상 대손 분담금과 이자 이차보전 금액을 추정하여 약 17억~20억 원의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액과 대손 분담금을 중개기관인 지역 신협에 제공하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기금이 소진되는 구조이다.

〈그림 4-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사업구조도



자료: 저자 작성.

1.4.3. 시사점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금은 자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사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적 금융의 사업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민간 중개기관인 지역 신탁의 대손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가 분담함으로써 민간재원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은 비록 순환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소진되는 구조이지만,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사회적 금융 사업의 리스크에 대해 후순위 부담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재원을 끌어오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¹⁾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 단위 민간기금 사례

2.1. 지역 단위 민간기금 집행 현황

지역 단위 민간기금으로 벤처자선의 유형인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이 있고, 자조기금으로 민간 전북사회적경제기금, 민간 전주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대구동구우애기금, 민간 충북사회적경제기금 등이 있다. 그 외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주)에서 경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민간기금으로 2021년에 융자사업을 진행한 곳은 부산, 인천, 전북 등이 있다.

¹⁾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라고 불리기도 한다. 남의 자본을 이용하거나 적은 자기 자본으로 수익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작은 규모의 사회적경제기금으로 10배가 되는 민간재원을 끌어오는 측면에서 레버리지 효과로 볼 수 있다.

〈표 4-3〉 지역 단위 민간기금의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연도별 공급 금액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벤처자선	1,000	1,450	1,450	1,450	인천, 부산
자조기금	0	0	0	89	전북, 전주
소계	1,000	1,450	1,450	1,539	

주: 공급 금액은 용자금과 경영지원사업비 예산까지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2.2.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사례

2.2.1. 기금조성 및 목적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은 부산광역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2018년 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부산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 기금에 출연한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다.

2.2.2. 사업구조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은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이 중개기관의 역할로 운영하고 있다. 중개기관이 사업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지원할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고 자금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지역의 창업 및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다. 창업기의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무상 재정지원(Grant)을 하고,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무이자 대출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그 외에 자금을 공급받은 기업 또는 조직에 경영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2.2.3. 시사점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무상 재정지원과 융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창업기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융자보다는 투자 또는 무상 재정지원이 보다 적합한 자금공급 방식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금공급 이외에도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측면을 보면 금융과 경영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영역량 강화는 향후 상환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2.3.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 사례

2.3.1. 기금조성 및 목적

인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은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으로 인천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인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 기금에 출연한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이다.

2.3.2. 사업구조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은 초기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이 증개기관의 역할로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구조를 보면 증개기관이 사업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지원할 사회적경제

기업을 선정하고 자금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법인 설립 2년 미만의 인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START-UP 분야로 보고 최대 1,000만 원의 무상 재정지원을 하며,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인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SCALE-UP 분야로 보고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지원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그 외에 공통으로 사업전략 고도화 컨설팅, 분야별 전문 멘토링,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 제품 소개 페이지 제작, 크라우드펀딩 지원, 공공구매 지원 등의 판로 지원을 한다. 또한 우수 펠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개발비로 최대 500만 원을 추가로 무상 재정지원하고 있다.

2.3.3. 시사점

인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동기금은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과 유사하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무상 재정지원과 용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 기금은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보다 다양한 경영지원을 하고 있다. 컨설팅뿐만 아니라 판로지원, 크라우드펀딩 지원, 우수 펠로 기업 지원 등은 기업의 역량 강화, 사회적 가치 추구 확산, 상환율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

2.4. 전북·전주 자조기금 사례

2.4.1. 기금조성 및 목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회원인 전북·전주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부터 차입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민간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전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4.2. 사업구조

전북·전주 자조기금의 중개기관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다. 중개기관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불가능하고, 차입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민간 자조기금은 지자체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과 매칭하여 전라북도 또는 전주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용자사업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2.4.3. 시사점

민간 자조기금이 지역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과 매칭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민·관 협력체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민간 자조기금은 지자체 기금과 연계하여 규모화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민간 자조기금의 측면에서 보면 외부 자금과의 매칭은 레버리지 효과를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제5장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5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1.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의 한계

1.1. 공공재원의 지역 불균등과 사회적 금융 정책의 한계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을 보면 ① 도매기금 설립, 중개기관 육성, 민간금융 참여를 통한 시장조성, ② 공공의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③ 심사·평가 및 전달체계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정부 정책을 통하여 최초 민간 도매형 중개기관인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설립을 지원하였고, 공공재원의 공급량은 2017년에 676억 원에서 2021년에 5,417억 원으로 증대시켰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심사 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지역 단위 공공재원은 여전히 열악하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13개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가 있고, 12개 지자체 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의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2021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사회적 금융 기금을 조성하여 공급하고 있는 곳은 광역 지자체 6개, 기초 지자체 8개 정도이다. 2021년 기준 지자체 전체 공급량 약 331억 원 중에 서울과 경기도의 공급량이 약 220억 원으로 전체 공급량 중 66.6%를 차지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 간의 자금공급 불균형이 크고, 비수도권 지자체 기금의 조성이 확대되지 않는 점은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의지와 예산으로 이러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기금을 운용할 지역 중개기관을 찾기 힘든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지자체에 근거 조례가 있더라도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역 중개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에 특화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유사수신행위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법률은 투자자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는 높으나 원금회수의 리스크가 높은 사회적 금융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어 중개기관이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

1.2. 지역 단위 민간재원 확보의 한계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의 주요 공급자는 공공재원으로 지자체 기금이 있고, 민간재원이 있다.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지자체 기금과의 매칭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민간재원의 확대는 필요하다. 지역 단위 민간재원은 기관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벤처자선,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회원으로 하는 자조기금, 지역 임팩트 펀드에 참여하는 투자자 등이 있다. 2021년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에서 지역 단위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함을 앞서 살펴보았다.

지역 단위 민간재원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역 중개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중개기관은 벤처자선의 출연금을 모아 내고, 자조기금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단위 민간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역 중개기관이 없는 지역이 많으며, 지역 중개기관이 있는 곳도 대부분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간재원을 확보하는 역량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 중개기관 육성을 통한 민간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벤처자선,²⁾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지역의 벤처자선에 참여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임팩트 투자에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1.3. 지역 중개기관 육성의 한계

지역 단위 중개기관 중에 투자형 중개기관은 없으며 융자형 중개기관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융자형 중개기관은 통상적으로 공공재원이 민간 수행기관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재대출되는 사업구조임을 살펴보았다. 민간 수행기관인 지역 중개기관은 3% 이하의 낮은 이자 수익으로 중개기관의 운영비와 대손을 감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2) 벤처자선(Venture Philanthropy)이란 사회적섹터 기관을 위한 투자를 의미하며, 벤처자선기업(Venture Philanthropy Firm)이란 이러한 벤처자선 형태에 벤처기업의 투자 원칙과 경영모델을 도입한 유한회사를 뜻한다(CSV Platform 웹사이트, http://www.csvplatform.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32&page=8, 검색일: 2022. 10. 25.).

중개기관이 지자체로부터 무이자로 5년간 5억 원을 차입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연리 3%의 이자로 대출한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손율의 통계치는 현재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8배수 보증에 근거하여 5년간 12.5%의 대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2.1%의 대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중개기관은 연리 3%의 이자수익 중에 2.1%를 대손 충당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0.9%의 연간 이자수익(450만 원)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심사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재대출 사업구조에서 중개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나 대손에 대한 분담 없이는 중개기관 육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공재원의 민간 수행기관을 통한 재대출로 자금을 공급할 경우 지역 중개기관에 대한 대손 부담, 운영비 지원 등의 설계가 필요하다. 재대출 사업구조가 아닌 위탁사업 구조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 중개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곳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바, 지역에는 사회적 금융 사업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고, 설립 초기에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힘들며, 사회적 금융 사업에 대한 운영 매뉴얼이 없고, 대출관리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기 힘든 점을 지적하였다. 즉, 지역 중개기관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인력, 시스템 등이 미비하여 중개기관 육성이 어려운 것이다.

2.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금융 정책과 제도, 사회적 금융 공급자와 수요자, 전달체계인 중개기관이다. 이러한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될 때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사회적 금융 정책 개선 방향,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지역 중개기관 육성 방안의 관점으로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 사회적 금융 정책 개선 방향

2.1.1. 지역 단위 균형 공급 제도 구축

사회적 금융 정책과 제도에서 공공재원의 확대, 지역 불균등 해소, 민간재원의 유인,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으로 공공재원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지역 간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매칭 공급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사회적 금융 지원법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금융의 지역 균등 공급, 중개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1.2. 공공재원의 ‘촉매 자본’ 역할

사회적경제기업에 장기적 관점으로 자금을 공급하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금융은 ‘인내 자본’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촉매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세계 최대의 임팩트 금융 콘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주제 중 하나는 ‘촉매 자본(Catalytic Capital)’이었다. 촉매 자본은 불균형한 리스크나 할인된 수익을 감수하는 부채, 지분, 보증 등을 의미한다. 글로벌 최대 임팩트 투자네트워크 중 하나인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자산 2,280억 달러 중 약 5%(114억 달러)가 촉매 자본에 해당한다. 촉매 자본은 스스로 수익을 포기하거나 손실을 선제적으로 감당해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므로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한다.

대표적인 지자체 기금으로 알려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인내 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촉매 자본’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대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민간 중개기관(수행기관)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과 충남의 사회적경제기금은 지자체가 대손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촉매 자본’의 역할을 한다. 충남의 경우 17억~20억 원의 지자체 예산으로 신협 200억 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촉매 자본(50~70% 손실 감당)으로 그 10배에 달하는 민간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그만큼 승수효과가 커진다.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의 정책적 설계를 할 때 민간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매 자본’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기금의 ‘촉매 자본’ 역할은 지역 중개기관의 대손 리스크를 분담하기 때문에 지역 중개기관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의 경우 대손에 대해 50%를 부담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역의 민간 비영리법인이 중개기관으로서 참여하였고, 지역 중개기관의 자조기금 조성 및 20%의 자부담 매칭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지자체의 ‘촉매 자본’ 역할은 지역 중개기관 육성에 기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촉매 자본’의 역할은 사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자체 기금 운용 원칙에서 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설정할 경우 지역 중개기관은 투융자 심사 시 사회적 가치보다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촉매 자본’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지자체 기금이 100% 대손 부담을 할 경우 중개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적절한 상호 부담의 검토가 필요하다.

2.1.3. 민간재원의 사회적 금융 참여 유인 체계 구축

민간 자조기금에 지자체 기금 등의 공공재원을 매칭하여 공급함으로써 자조기금 조성 및 규모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민간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후순위 투

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임팩트 펀드의 민간재원 결합이 활성화되도록 유인하고, 벤처자선 참여기업의 경우 지역 내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 내 사회공헌기금이 사회적 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 사회적 금융 지역 중개기관 육성 방안

2.2.1.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요건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하 지역 중개기관)은 적합한 법인 형태, 전문성, 사회적 경제 이해도, 적합한 평가 시스템, 지역 네트워크 및 지역 착근성 등이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으로서 적합한 법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의 사업 목적에 사회적 금융 사업이 명시되어야 하고, 영리법인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 중개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금융 사업 경험이 있는 인력, 자본금, 사업자금, 운영매뉴얼, 전산 시스템, 사무인프라 등의 사업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주요 투융자 대상이 사회적 경제기업이기 때문에 대상선정, 약정 및 계약 체결, 상환관리, 사후관리 등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투융자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평가 시스템은 금융지원 대상 선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금융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성과 평가에서도 의미가 크다.

다섯째, 지역 네트워크 및 지역 착근성이 필요하다. 지역 중개기관이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금융 수요 욕구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적 금융 상품을 설계하거나, 대상 선정에서 지역 네트워크의 추천을 받거나, 사후관리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 착근성이란 조직이 커뮤니티, 지역, 활동 부문 등과 맺고 있는 관계를 가리킨다. 커뮤니티 착근성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관계자본의 질을 결정하는데, 관계자본은 미션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커뮤니티가 그것을 인정할 때 커뮤니티로부터 생성되는 자본(자원봉사, 기부금 등)을 의미한다. 착근성은 지역 중개기관의 자금조달 시 지역으로부터의 도움, 지역프로젝트 수행 시 기획부터 실행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지역자원 연계, 기부금 및 기타 지역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착근성은 지역 중개기관의 재무적 현황에 고려되지 않지만 자금조달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로 지역 중개기관 평가에 고려할 수 있다.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사회적 금융 사업 구조를 보면 일반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금상자 5-1〉 일반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 사례

-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사회적 금융 사업 담당자 인터뷰 내용 -

첫째, 높은 사회적 경제의 이해도입니다.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 유관기관, 중간지원기관 등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되어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심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게 대출신청기업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경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 사회적금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입니다.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사회적 금융 사업에 대한 노하우 전수,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호 강점인 분야의 사업을 전담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의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하여 전복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출심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신보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넷째, 특별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전북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인원 2명, 외부인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원은 지역 내 교수, 사회적 금융 종사자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입니다. 법인의 사회적 금융 업무수행의 전문성, 투명성, 형평성, 지역 착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자격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2021: 17).

2.2.2. 지역 중개기관 육성 전략

지역 중개기관 육성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규모화를 통한 성장, 운영비 절감의 운영 효율화, 내부 역량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지역 중개기관 육성 전략을 4 Track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투융자 사업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재원, 도매형 민간 중개기관이 메인 자금공급자가 되어 기존 지역 중개기관의 사업을 규모화함으로써 지역 중개기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간의 협업·연대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로컬 크리에이터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지역에 사회적 금융을 공급할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P2P), 도매형 중개기관, 지역 자조기금 등이 협업하여 지역 중개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셋째,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의 중개기관 신규 설립은 열악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쉽지 않기 때문에 운영

비 절감 등의 운영 효율화와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이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전북 지역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권역별 통합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사업 담당 인력을 확보하기 쉬우며, 기존의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등의 사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신규 설립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신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설립 시 설립 지원 및 초기 사업자금 및 운영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회원으로 하는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주도하여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를 설립하였고 지역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십시일반하여 5,000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였고, 도매형 중개기관인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초기 자본금 및 사회적 금융 사업자금을 공급한 사례가 있다.

2.2.3. 지역 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등의 공공재원이 지역 중개기관에 공급될 때 지역 중개기관 육성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 대손에 대한 분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중개기관의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컨설팅, 투융자 대상 검토 및 심사, 자금 집행 실무, 상환 및 사후관리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중개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다. 지역의 소매형 중개기관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투융자 심사 기준 설정, 사업자금 운용 매뉴얼, 대출관리 전산 시스템, 성과관리 등의 운용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도매형 중개기관의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

2.3. 지자체 기금 운용 시 효과성 제고 방안

2.3.1. 성과관리

지자체 기금이 원금 회수를 최우선 목적으로 두지 않고,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및 성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고 등의 성과관리가 중요하며, 지역 중개기관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업 초기 지역 중개기관은 경험도 부족하고, 성과관리 보고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힘들 수 있다. 도매형 중개기관인 (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개발한 임팩트 보고 지표(IMP, SDGs)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2.3.2. 지역의 민관협력 기금조성

지역 중개기관의 규모화를 위해 민관협력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지역 금융기관, 지역 공기업, 지역 민간기업 등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 기금을 매칭하여 규모화함으로써 레버리지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민관협력 기금조성 및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지역 사회적 금융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초기 조직화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 중개기관이 적극 주도할 수 있다.

2.3.3. 경영지원사업 연계

투융자지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사업개발비 지원 연계로 부족한 사업자금을 보충할 수 있다. 특히, 소셜벤처 등 신규 설립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 가

치가 높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연계할 경우 창업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의 지역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투융자지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재무 컨설팅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심각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용할 수 있다. 컨설팅 결과로 제안된 경영개선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투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즉 先 컨설팅, 後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금융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다. 모든 투융자 기업에 적용하기 힘들 경우 심사 과정에서 선별하여 컨설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다.

그 외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직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투융자 지원기업에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자금 신청,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교육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회적 금융으로 공급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중개기관이 아닌 지원조직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금융과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사업과 사회적 금융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의 경우 기금의 약 10%를 중개기관의 운영비와 지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지역 중개기관이 용자를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 록

1. 지역별 중개기관 리스트

NO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투융자	소재지	영역	분류 1	분류 2
1	(주)한국사회혁신금융	투자	경기	전국	SIB 운영기관	전국
2	와디즈플랫폼	투자	경기	전국	P2P 플랫폼	전국
3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융자	경남	경남	대출중심	지역 기반
4	포스코기술투자(주)	투자	경북	전국	투자중심	전국
5	나눔대부와사회연대(주)	융자	광주	광주	대출중심	지역 기반
6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융자	대전	대전	대출중심	지역 기반
7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융자	부산	부산	대출중심	지역 기반
8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융자	부산	부산	대출중심	지역 기반
9	(사)나눔과미래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10	(사)피피엘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11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12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13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14	(재)밴드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15	(재)한국사회투자	투융자	서울	전국	대출/투자	전국
16	(재)함께일하는재단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17	논골신탁	융자	서울	서울	대출중심	서울
18	동작신탁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19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20	북서울신탁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21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22	신목신탁	융자	서울	서울	대출중심	서울
23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24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융자	서울	전국	대출중심	전국
25	한살림펀딩(주)	융자	서울	전국	P2P 플랫폼	전국
26	(주)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27	(주)비플러스	투자	서울	전국	P2P 플랫폼	전국

(계속)

NO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투융자	소재지	영역	분류 1	분류 2
28	(주)엘로우독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29	(주)오마이컴퍼니	투자	서울	전국	P2P 플랫폼	전국
30	(주)HGI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31	IBK투자증권(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32	IFK인팩트금융(유)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33	KB인베스트먼트(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34	고려대기술지주(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35	다담인베스트먼트(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36	대성창업투자(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37	더웰스인베스트먼트(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38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39	메가인베스트먼트(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40	(주)블루포인드파트너스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41	비하이인베스트먼트(유)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42	(주)소풍벤처스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43	시몬즈자산운용(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44	신한대체투자운용(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45	아크인팩트자산운용(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46	(주)엠와이소셜컴퍼니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47	(주)인팩트스퀘어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48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49	코메스인베스트먼트(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50	쿨리치코너인베스트먼트(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51	(주)크레비스파트너스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52	(주)티비티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53	(유)팬인팩트코리아	투자	서울	전국	SIB 운영기관	전국
54	(주)퓨처플레이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55	프렌드투자파트너스(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56	미시간벤처캐피탈(주)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57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융자	인천	인천	대출중심	지역 기반
58	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융자	인천	인천	대출중심	지역 기반
59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융자	제주	제주	대출중심	지역 기반
60	(사)충남사회경제연대	융자	충남	충남	대출중심	지역 기반
61	(사)사랑과경제	융자	충북	충북	대출중심	지역 기반
62	(사)충북시민재단	융자	충북	충북	대출중심	지역 기반
63	SfK Korea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계속)

NO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투융자	소재지	영역	분류 1	분류 2
64	텀블벅(주)	투자	서울	전국	P2P 플랫폼	전국
65	(사)더브릿지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66	씨프로그래(유)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67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융자	전북	전북	대출중심	지역 기반
68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69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융자	강원	강원	대출중심	지역 기반
70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융자	강원	강원	대출중심	지역 기반
71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융자	경북	경북	대출중심	지역 기반
72	센트럴투자파트너스	투자	서울	전국	투자중심	전국
73	(주)베네핏솔루션	융자	서울	서울	대출중심	서울

자료: 저자 작성.

2. 지자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현황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16.	일자리경제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1.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15.	기업경제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1.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0. 21.	소상공인지원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1.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6. 30.	일자리경제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4. 그 밖에 사회적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11. 6.	일자리총괄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4. 그 밖에 사회적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5. 17.	일자리경제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1.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 6.	일자리정책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 지원할 수 있음. 1.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2. 31.	일자리정책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 지원할 수 있음. 1.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10. 8. 16.	지역경제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1.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31.	교육청소년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1.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7. 28.	일자리경제과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마련할 수 있음. 1.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5. 13.	사회적경제과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할 수 있음. 1.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9. 27.	군정혁신담당관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할 수 있음. 1.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경상북도	울산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31.	일자리정책과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할 수 있음. 1.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서울시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5. 24.	일자리정책담당 관	일반기업(연계기업)과 상호 협약에 따라 공동 추진 가능, 송파구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음. 1. 송파구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네 트워크의 구축/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지원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 참여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 지원/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11. 12.	참여공동체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 참여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1. 20.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음.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3. 15.	주민공동체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해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음.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8. 20.	지역경제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해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지원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2. 31.	시민공동체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해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기반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조성 -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15.	사회적경제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기반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5.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해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기반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조성 - 개인 및 단체에 표창할 수 있음.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7. 27.	사회적경제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기반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조성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9. 11.	일자리경제과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해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기반의 구축 및 활동 지원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 가능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0. 27.	일자리지원	<p>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p> <p>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지원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p> <p>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p> <p>1.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p> <p>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p> <p>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p>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가능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09. 4. 15.		<p>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함.</p> <p>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기반년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p> <p>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p> <p>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포상할 수 있음.</p>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가능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2. 31.	지역공동체팀	<p>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p> <p>1.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p> <p>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p> <p>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p>	지자체+민간 협력 기금 조성가능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0. 19.	상생경제과	<p>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특별보증 실시할 수 있음,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함.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자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p> <p>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p> <p>1.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p>	사회적경제 조직 특별보증 가능 지자체+민간 협력기금 조성가능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강원도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12. 30.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할 수 있음. 특별보증 지원을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18. 7. 13. 신생). (2014~2016년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이력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 특별보증 가능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15. 1. 12.	일자리정책과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별보증 지원할 수 있음(세부조항 없음).	사회적경제 조직 특별보증 가능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1. 15.	공동체세미들과	사회적경제 조직 중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음. - 보증한도는 1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로 하며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사회적경제 조직 특별보증 가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0. 8. 23.	경제교통과	사회적경제 조직 중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음. - 보증한도는 1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로 하며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함.	사회적경제 조직 특별보증 가능
서울시	서울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2010. 4. 28.	예산과	- 서울 용도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용자(비용은 구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사회적기차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유관조례 제정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지원 3.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 지원 4.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비 등 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 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2020. 12. 31. 개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유관조례 제정
서울시	서울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 관리 조례	2006. 5. 30.	기획예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사용 용도]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금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2호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과 기금 공모사업 등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유관조례 제정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9. 10. 30.	사회적경제과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4.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 5. 사회적 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준속기한: '24. 12. 31., 연장 가능)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별도조례 제정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5. 6. 10.	사회적경제과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준속기한: '23. 12. 31., 연장 가능) ① 기금은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단체와 조직, 기업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타당한 신용평가 모델과 자산평가 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 대출, 보증 및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유 단체 설립 또는 운영지원 3.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유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준속기한: '25. 12. 31.).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별도조례 제정
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 7. 19.	사회적경제과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투자·옹자·보증 지원 2.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3.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준속기한: '25. 12. 31.)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별도조례 제정
경상남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6. 25.	사회적경제 추진단	1.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4.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비·옹자사업비 지원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별도조례 제정
서울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2. 7. 30.	사회적경제 담당관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별도조례 제정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서울시	서울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4. 12. 31.	일자리정책과	7. 수행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차자역 보전 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용자 또는 보조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 모사업 등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별도조례 제정
서울시	세종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4. 12. 31.	일자리정책과	기금 용도(주요 특이사항) -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종속기한: 2023. 12. 31.)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별도조례 제정
서울시	세종시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8. 11. 12.	참여공동체과	1.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용자 지원 2.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경비 3.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종속기한: '23. 12. 31.)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별도조례 제정
전라북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8. 14.	사회적경제과	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 설립 또는 운영 지원 2.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보 전과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3.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사회적 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용자의 이차자역 보전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북도지 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종속기한: '24. 6. 30.)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별도조례 제정
서울시	서울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기금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4. 12. 26.	주민공동체과	사회투자 기금 설치 및 운용 -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투자 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대체 강구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정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 부를 기금 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유관 조례로 정함)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가능)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서울시	서울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8. 4.	사회적경제과	사회적 경제투자 기금 조성 및 운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관리조례에서 정함(‘20. 12. 30.)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유관 조례로 정함)
서울시	서울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2015. 5. 7.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유관 조례로 정함)
전라남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8.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할 수 있음(조례로 정함). 특히 보종 지원해야 함(세부조항 없음).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 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포상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지자체+민간 협력기금 조성가능
경상북도	대구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2. 12.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로 정함) -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용도로 활용하 는 등 대책 가능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의 일부를 기금 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가능)
경상북도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4. 1.	일자리투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로 정함) -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용도로 활용하 는 등 대책 가능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의 일부를 기금 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가능)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경상북도	대구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10.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로 정함) -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용도로 활용하 는 등 대책 가능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의 일부를 기금 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가능)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0. 29.	시장경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함) -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용도로 활용하 는 등 대책 가능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의 일부를 기금 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가능)
강원도	태백시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6. 27.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할 수 있 음(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5. 31.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기금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경상북도	의령군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6.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할 수 있 음(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경상북도	대구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9. 30.	사회적경제과	사회적 금융 시스템 구축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 설 치 및 운용할 수 있음(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경상북도	대구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30.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경상북도	대구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0.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경상북도	울산시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7. 12.	사회혁신담당관	사회적 금융 시스템 구축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 설 치 및 운용할 수 있음(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서울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4. 5. 14.	사회적경제 담당관	재정지원(사업비 지원) 및 기금(사회적 금융 시스템 구축, 기금 설 치 운용-조례로 정함)의 설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0. 29.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운용(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서울시	서울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4. 18.	일자리벤처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서울시	서울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5.	자치미울과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서울시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1. 16.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서울시	서울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0. 01.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서울시	서울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8.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15.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할 수 있음(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21. 3. 31.	농촌활력과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할 수 있음(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전라북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8. 10. 5.		사회적경제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기금을 설 치 및 운용할 수 있음(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2021. 9. 17.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19.	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별도 조례로 정함)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4. 27.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 육성기금(별도 장 조항 마련)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음. 동일한 내용으로 시의 다른 조례 또는 기금에서 이미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지원할 수 없음. -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개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 및 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준치 기간: '25. 12. 31.)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지자체+민간 협력기금 조성가능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7. 28.	미래전략관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할 수 있음. 1.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 협력과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지원 2. 연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지원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지자체+민간 협력기금 조성가능
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 10.	소통협력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단, 본래이 차안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할 수 있음. 민간부문 참여 유도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장려해야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지자체+민간 협력기금 조성가능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0. 15.	일자리경제과	<p>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정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p>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활동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p>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p> <p>지자체+민간 협력기금 조성가능</p>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2018. 10. 1.	일자리정책과	<p>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정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준치 기간: '22. 12. 31.) <p>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활동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p>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p> <p>지자체+민간 협력기금 조성가능</p>
충청남도	대전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4. 18.	일자리정책실	<p>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p> <p>-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용에 필요한 지원(자활기업은 제외)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정상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p>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p> <p>지자체+민간 협력기금 조성가능</p>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충청북도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5.		구청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인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기금 등의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할 수 있음(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지원할 수 있음(세부 조항 없음). 민간부담 참여 유도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장려해야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기능 지자체+민간 협력기금 조성가능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8. 28.	혁신공동체과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금융 등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21. 3. 9. 신설).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 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가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이자보전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과 연계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기능 사회적경제 조직특례 보증가능 이자보전 가능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2. 12.	자치분권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음.(조례로 정한다는 조항 없음)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음.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기능 사회적경제 조직특례 보증가능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6. 10. 31.	주민협력담당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기금(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할 수 있음.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투자 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대책강구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법인 및 단체에 위탁가능)
경상북도	부산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1. 11.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 - 다음 용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가능. 단, 타 기금에서 동원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서울시	서울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9. 25.	마을합치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 - 다음 용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가능. 단, 타 기금에서 동원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서울시	서울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8. 10. 26.	일자리정책과	재정지원 등 - 사회적경제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정한다 는 조항 X)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서울시	서울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2. 28.	경제진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 - 다음 용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가능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서울시	서울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7. 18.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 - 다음 용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가능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서울시	서울시	영등포 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4. 24.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조성 및 운용 - 다음 용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가능. 단, 타 기금에서 동일 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서울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21. 9. 23.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정한다(조항 X))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서울시	서울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5. 10. 1.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사회투자기금) 설치 운용할 수 있음(조 례로 정한다는 조항 X).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서울시	서울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5. 7. 15.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인천시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0. 9. 16.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음.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자활기업은 제외)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지원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31.	경제유통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할 수 있음 (조례로 정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전라남도	광주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0. 29.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음. 1. 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 2.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구정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2013. 8.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함)은 조항 없음) 제4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세부 조항이 있었으나 2020. 11. 13. 개정에 따라 세부 조항 삭제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31.	투자경제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기금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세부조항 없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2. 29.	풀뿌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위원회 심의, 타 기금에서 등 일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음)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전라남도	익산시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09. 7. 8.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 1.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준치 기한'21. 6. 30.)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2.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할 수 있음 (세부 관련 조항 없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2020. 7. 15.	농어촌식품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할 수 있음 (세부 관련 조항 없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1. 2. 17.	사회적경제과 소셜굿즈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환경·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투자 사업 3.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제품 개발 및 활동 지원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및 연구용역 수립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준속기한: '26. 6. 30.)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2014. 12. 30.	사회연대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준치 기간: '25. 12. 31.)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09. 11. 10.	뉴딜경제과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3. 사회적 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준속기한: '24. 12. 31.)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15.	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주제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7. 22.	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0. 1.	경제에너지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강원도	인제군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 7.	경제협력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강원도	정선군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2015. 2. 23.	사회적경제팀	기금 관련 조항 X	X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2. 30.	경제진흥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 2.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강원도	홍천군		홍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9. 21.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9. 4. 12.	경제진흥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12. 16.	경제고용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2. 29.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9. 30.	산업지원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기도	기평군		기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9. 29.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14. 5. 8.	일자리복지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 7.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0. 7.	사회적경제팀	기금 관련 조항 X	X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2. 13.	도시재생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15. 12. 31.	일자리경제	기금 관련 조항 X	X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9.	일자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7.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4. 29.	지역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5. 11.	도시재생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2018. 5. 10.	일자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 12. 22	일자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3. 14.	지역활성화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6. 28.	경제교통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5. 2.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기금 관련 조항 X	X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주제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1. 15.	일자리창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1.	도시재생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4	경제교통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16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5. 18	경제전략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남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6. 28	사회적경제 추진단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2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14.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8.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31.	새마을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3. 29.	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28.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17.	경제일자리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19.	경제기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거창군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25.	경제교통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대구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9. 30.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부산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2019. 5. 24.	일자리창출계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부산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2018. 10. 31.	복지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부산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2.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부산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10. 16.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부산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1.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부산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2019. 9. 20.	일자리복지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14.	경제교통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2014. 1. 3.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31.	새마을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7.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24.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29.	일자리노사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울산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5. 3. 20.	소상공인진흥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울산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1.	경제일자리 담당관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울산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5.	일자리기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울산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6. 8.	일자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24.	일자리지원팀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 1.	경제신림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31.	미래전략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9.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지역 1	지역 2	지역 3	주제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2. 16.	일자리창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2021. 7. 15.	일자리창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29.	새마을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27.	일자리경제 노동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경상북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4. 17.		기금 관련 조항 X	X
서울시	서울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9. 3. 28.	일자리지원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7. 31.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서울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6. 17.	사회적경제팀	기금 관련 조항 X	X
서울시	서울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11.	일자리창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서울시	서울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6.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8. 2.	일자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주제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서울시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2015. 10. 1.	사회적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인천시	옹진군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1. 3.	일자리정책팀	기금 관련 조항 X	X
인천시	인천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3. 23.	일자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인천시	인천시	남동구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2. 17.	일자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인천시	인천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26.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인천시	인천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2. 31.	일자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인천시	인천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4. 9.	공동체협력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인천시	인천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1. 13.	일자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인천시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3. 8.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인천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 18.		기금 관련 조항 X	X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1. 5.	일자리창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9. 28.	인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8. 3.	인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1. 14.	투자일자리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8. 14.	지역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광주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6. 3. 30.	지역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광주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2. 24.	일자리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5. 6. 9.	사회적경제팀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2019. 7. 1.	일자리청년 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0. 16.	미래성장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 31.	경제산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2015. 10. 1.	지역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전라남도	여주시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1. 10.	인구일자리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6. 30.	인구일자리 정책실 사회적경제담당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12. 31.	일자리공동체팀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0. 24.	경제교통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9. 24.	경제교통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합평군		합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1. 15.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7. 13.	일자리정책실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4.	공동체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4. 12. 31.	경제정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충청남도	대전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2019. 10. 18.		기금 관련 조항 X	X
충청남도	대전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5. 17.	공동체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4. 10.	경제기업과	기금 관련 조항 X	X

(계속)

지역 1	지역 2	지역 3	조례명	제정	책임부서	기금조성 근거조항(요약)	유형
충청남도	대전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4. 6.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충청남도	대전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5. 13.	일자리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31.	경제과	기금 관련 조항 X	X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27.	일자리투자과	기금 관련 조항 없으나 위원회 기능 내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운 용 심의에 관한 사항은 있음.	△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8).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금융위원회. (2021). “21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문진수. (2019). 사회적 금융의 의의와 역할.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
박정환. (2019).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 CDFI 사례조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윤호중. (2016). 사회적경제기본법안(발의일 2016. 8. 17.).
이준호. (2015).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지은. (2022).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중개기관을 통한 사회적금융 공급사업. 2022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자금조달 설명회 발표자료.
장종익. (2018). “한국 사회적금융 발전의 특징과 과제.” 신탁중앙회 신탁연구 제70호.
조태영. (2022). 202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안내. 2022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자금조달 설명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19). 투융자운용세칙(2019. 11. 8. 제정).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1).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0 연차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 12. 30., 타법개정) 제4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
서울특별시사회투자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8235,20211230\)](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사회투자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8235,20211230))). 검색일:
2022. 9. 30.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 2022. 10. 21. 전라북도조례 제5132호,
2022. 10. 21., 일부개정) 제5조([https://www.law.go.kr/LSW/ordinInfoP.
do?ordinSeq=1739971](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39971)). 검색일: 2022. 10. 2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 10. 18. 충청남도조례 제5272
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7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
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 검색일: 2022. 10. 25.

CSV Platform 웹사이트([http://www.csvplatform.net/bbs/board.php?bo_table=
data&wr_id=132&page=8](http://www.csvplatform.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32&page=8)). 검색일: 2022. 10. 25.

KREI

www.krei.re.kr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9 791161 495996
ISBN 979-11-6149-599-6